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6. 16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



1. 건 명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, 같은법 제29조제1항·제3항·제4항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내용		
김O현	96.2.15.	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	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상담일자('21.4.13.) 및 1,2차 출석통지일에 출석하지 않음. 1차 출석통지: '21. 4. 22. 2차 출석통지: '21. 4. 27.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○ 처분일('21.6.04.)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1길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1. 6. 16. ~ 2021. 6. 30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강지현(Tel. 031-412-66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